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견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된 임진각주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,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6조)
 - 가. 관광사업개발 및 관광시설운영계획
 - 나. 통일열차 관광사업
 - 다.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운영사업
 - 라. 평화의 종 관광이벤트 사업
 - 마. 만남의 장 운영 관리
- 공단 직원의 정원을 증원함(안 제20조)
 - 가. 정규인력 25명을 32명으로 조정 (증7명)
 - 일반직 : 3명(3급 1명, 4급 1명, 6급 1명)
 - 기능직 : 4명(3급 2명, 4급 2명)
 - 나. 비정규직 인력 67명을 68명으로 조정 (증 1명, 청사관리원)

- “관광경영팀”을 신설하고 관리팀을 시설운영팀으로 명칭변경
(안 제20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95조 (사무의 위임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94·12·20>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

제5조 (정관)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8조 (권한의 위탁)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임진각주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,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고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- 또한 민간위탁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.

- 다만, 공단 직원의 정원을 25명→32명으로 7명이나 증원함과 “관광경영팀”을 신설하는 기구의 증설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각 분야별 사업은 금년도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완료된 분야의 사업도 아직까지 운영해보지 못하였기 수익적 측면을 볼 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의 증원 및 기구의 증설은 신중히 검토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됨.